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4.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구미에코랜드 내 「어드벤처 트리타워」 신설에 따라 이용료 규정 등 조례를 정비하여 이용객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의 신설에 따른 정의, 현황 및 이용료 등 규정 정비(안 제3조, 제9조, 안 별표 1~5)

나. 용어, 띄어쓰기 및 인용사항 정비(안 제3조~제5조, 제9조~제16조, 안 별표 3~5)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산5-1번지”를 “산 5-1번지”로, “모노레일,짚코스터,산동
참생태숲”을 “모노레일, 짚코스터, 어드벤처 트리타워, 산동참생태숲”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그 다음”을 “그다음”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시설의 이용시간)”을 “(시설의 이용 시간)”으로 하고, 같
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용시간은”을 “이용 시간은”으로, “이용시
간을”을 “이용 시간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모노레일,짚코스터”를 “모노레일, 짚코스터, 어드벤처 트
리타워”로, “모노레일 등)”을 ““(모노레일 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4시간내”를 “24시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예
약개시”를 “예약 개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현장판매”를 “현장
판매”로 한다.

제10조 중 “예약사항”을 “예약 사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각종회의”를 “각종 회의”로, “이용제한”을 “이용 제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개·보수”를 “개보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원인제공자”를 “원인 제공자”로 한다.

제13조 중 “시설운영”을 “시설 운영”으로 한다.

제14조 중 “그 다음”을 “그다음”으로, “출납계좌”를 “출납 계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경우에는 「구미시」를 “경우에는 「구미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탁기간”을 “위탁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갱신기간”을 “갱신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문화·휴양시설”을 “산림문화휴양시설”로, “이해증진”을 “이해 증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용증진”을 “이용 증진”으로 한다.

별표 1에 “어드벤처 트리타워”, “숲속놀이마당 및 생태학습장”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에 “어드벤처 트리타워” 이용 시간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에 “어드벤처 트리타워” 이용료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각각의 시설이용료 개인란 세부내용에 “원”을 추가한다.

별표 4에 “어드벤처 트리타워” 이용료 감면 사항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같은 표 구분란 및 비고란 각각의 “다자녀 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 하고, 감면율란의 “%”를 “퍼센트”로 하며, 같은 표 비고란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제26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제2조”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에 “어드벤처 트리타워” 이용료 등 반환 기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처리 기준란의 “%”를 “퍼센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이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구미에코랜드 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구미에코랜드 시설 현황(제2조 관련)

구분	위치	층별	시 설 명	주요구조	면 적	비 고
산림 문화관	산동읍 인덕 1길 240	옥외	다목적잔디광장, 물빛정원 염료식물원, 주차장	방문객 쉼터	27,000m ²	
		지하	기계실, 수장고	철 근 콘크리트	3,856m ²	
		지상 1층	산림생태 전시/체험장, 영상관, 카페 테리아, 관리사무실	“	“	
		지상 2층	산림생태 전시/체험장 녹색체험교실	“	“	
		지상 3층	모노레일 탑승 대기실	“	“	
모노 레일	“	생태탐방 모노레일	모노레일 및 정거장		모노레일(1.8km), 정거장(3개소), 차량(8인승 7대)	
짚 코스터	“	짚코스터	짚코스터, 출발지, 도착지		짚코스터(400m), 출발지·도착지, 공중화장실, 창고 등	
어드벤처 트리타워	“	어드벤처 트리타워	전망대 모험시설		트리타워(2층, 높이 18m)	
산동참 생태숲	“	산동참생태숲	목공예체험장 숲속쉼터 등	100,000m ²	관리사무소(1동), 숲속 교실(1동), 관찰원(1동), 목공예체험장(1동) 등	
자생 식물 단지	“	자생식물단지	자생식물 관찰장	80,000m ²	야생화단지(1동), 탐방로, 테마원 (1동), 숲속교실(1동), 습지관찰원 (1동), 간이온실(1동) 등	
산림 복합 체험 단지	“	산림복합체험단지	산채체험장, 연구시험장	400,000m ²	체험활동·소득생산지구(31ha), 연구 시험지구(9ha), 육묘장(1동), 퇴비장 (1동), 탐방로(5.7km), 관수시설	
숲속놀이마당 및 생태학습장	“	숲속놀이마당 및 생태학습장	둔덕놀이터, 관찰테크 등	1,700m ²	둔덕놀이터, 관찰테크, 테크길, 창고(1동) 등	
어린이 테마 교과숲	“	어린이테마교과숲	교과별 수목식재, 숲속교실, 숲속도서 관 등	12,000m ²		
문수 산림 욕장	“	문수산림욕장	등산로, 편의시설	100ha	전망대(인덕정), 목교, 주차장, 등산로 7.8km 운동시설, 평의자 등	

■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구미에코랜드 이용 시간(제5조 관련)

□ 산림문화관, 모노레일, 짚코스터, 어드벤처 트리타워 이용 시간

구 분	이용시간	비 고
산림문화관 관람시간	· 09:00~18:00 (17:30분 입장마감)	
생태탐방 모노레일	· 동절기 : 09:00~16:00 · 하절기 : 09:00~17:00	※ 필요 시 연장 또는 단축운영 (기상악화, 결빙 등)
짚코스터	· 동절기 : 10:00~16:30 · 하절기 : 10:00~17:30	
어드벤처 트리타워	· 동절기 : 09:30~16:00 · 하절기 : 09:30~17:20	

※ 동절기 : 11월~2월, 하절기 : 3월~10월

■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3]

시설이용료, 체험활동비(수강료) 기준(제7조 관련)

□ 생태탐방 모노레일 이용료

구 분	기 준	개 인	단 체 (20인 이상)	비 고
어른(19세 이상 64세 이하)	1회	6,000원	5,000원	
어르신(65세 이상) 청소년 및 어린이 (3세 이상 18세 이하)	1회	4,000원	3,000원	※3세 미만 무료

□ 짚코스터 이용료

구 분	기 준	개 인	단 체 (20인 이상)	비 고
어른(19세 이상 64세 이하)	1회	10,000원	8,000원	
청소년(11세 이상 18세 이하)	1회	8,000원	6,000원	

□ 어드벤처 트리타워 이용료

구 분	기 준	개 인	단 체 (20인 이상)	비 고
어른(19세 이상 64세 이하)	1회	20,000원	16,000원	
어르신(65세 이상) 청소년 및 어린이 (8세 이상 18세 이하)	1회	16,000원	12,000원	

□ 체험활동비(수강료)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어르신 (65세 이상) 청소년 및 어린이 (3세 이상 18세 이하)	어른 (19세 이상 64세 이하)	
녹색체험교실 및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	1명/1개월	15,000원 ~ 40,000원	20,000원 ~ 60,000원	○ 프로그램 이용료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1명/1시간 이하	2,000원 ~ 5,000원	3,000원 ~ 8,000원	

※ 재료비는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4]

구미에코랜드 시설이용료, 체험활동비 감면(제8조 관련)

구 분		감 면 율	비 고
생태탐방 모노레일, 짚코스터 및 어드벤처 트리타워 이 용 료	- 구미시민	50퍼센트	
	- 구미시민 다자녀가정	60퍼센트	
	- 구미시민 기초생활수급자	60퍼센트	
	-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 1명	60퍼센트	
	- 국가보훈대상자	60퍼센트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60퍼센트	
	- 홍보행사 등의 수상자(당첨자)	100퍼센트	※ 무료쿠폰지급 - 1회무료/3회수상
체험활동비 (수강료)	- 구미시민	50퍼센트	
	- 구미시민 다자녀가정	100퍼센트	
	- 구미시민 기초생활수급자	100퍼센트	
	-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 1명	100퍼센트	
	- 국가보훈대상자	100퍼센트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100퍼센트	

※ 비 고

-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구미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구미시민 다자녀가정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구미시민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 구미시 다자녀가정이란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인 등급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을 따른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를 말한다.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말한다.
- 수강료의 면제는 수강료 감면 대상자가 동일 기간에 개설되는 과목 중 원하는 하나의 수강 과목에 한정한다.

■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5]

구미에코랜드 시설이용료 등 반환 기준(제10조 관련)

1. 시설이용료(모노레일, 짚코스터, 어드벤처 트리타워) 반환 기준

구분	해지 유형	처리 기준
이용자의 귀책사유	□ 생태탐방 모노레일, 짚코스터, 어드벤처 트리타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또는 계약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티켓 금액의 100퍼센트 환불)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 (티켓 금액의 90퍼센트 환불)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30퍼센트 공제 후 환급 (티켓 금액의 70퍼센트 환불)
	• 사용예정일 당일(탑승시간 전) 취소	• 총 요금의 50퍼센트 공제 후 환급 (티켓 금액의 50퍼센트 환불)
	• 사용예정일 당일(탑승시간 후)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 요금의 100퍼센트 공제 (환불 불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사유		• 계약금 환급 (티켓 금액의 100퍼센트 환불)
시설운영자 귀책사유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티켓 금액의 100퍼센트 환불)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퍼센트 배상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퍼센트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퍼센트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80퍼센트 배상
<p>※ 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자가 사용 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사용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당일(탑승시간 후) 취소로 본다. 2. 시설 운영자가 당일 탑승 전까지 이용자에게 모노레일 및 짚코스터 이용 제한을 사전 통보하였을 경우 배상금은 제외한다. 		

2. 체험활동비(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모집정원 미달 등 구미 에코랜드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강의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강의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의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강의개시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1. 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 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 체험활동비는 강의 개시 이후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구미에코랜드”란 산동읍 인덕리 <u>산5-1번지</u> 일원에 조성한 구미시산림문화관(이하 “산림문화관”이라 한다), <u>모노레일, 짚코스터, 산동참생태숲, 자생식물단지, 산림복합체험단지, 어린이테마교과숲, 문수산림욕장</u> 등의 산림문화휴양시설과 <u>산림문화공원</u>구역을 말한다.</p> <p>2.·3. (생략)</p> <p>제4조(개관 및 휴관일) ① 구미에코랜드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p> <p>1. (생략)</p> <p>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u>그 다음</u>의 첫 번째 비공휴일</p> <p>3.·4. (생략)</p>	<p>제3조(정의) ----- -----.</p> <p>1. ----- -- <u>산 5-1번지</u> ----- ----- ----- <u>모노레일, 짚코스터, 어드벤처 트리타워, 산동참생태숲</u>----- ----- ----- ----- -----.</p> <p>2.·3. (현행과 같음)</p> <p>제4조(개관 및 휴관일)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 <u>그다음</u>----- -----</p> <p>3.·4. (현행과 같음)</p>

② (생략)

제5조(시설의 이용시간) 구미에코랜드의 시설별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으며, 시설별 이용시간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예약) ① 모노레일, 짚코스터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이하 모노레일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달의 전 달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모노레일 등을 예약한 사람은 예약일로부터 24시간내에 제7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시설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의 우선 예약은 예약개시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구미시민을 우선하여 접수하고, 9시 이후부터는 다른 지역 주민과 구분 없이 접수하는 방식으로 한다.

⑤ 모노레일 등 이용권의 티켓 현장판매는 구미시에서 전담하되 인터넷(모바일 포함) 예매를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시설의 이용 시간) -----
----- 이용 시간은 ----
----- 이용 시간을

--.

제9조(시설의 예약) ① 모노레일, 짚코스터, 어드벤처 트리타워 -
--- “모노레일 등”이라 한다)-

-----.

② -----
----- 24시간 내-----

--.

③ (현행과 같음)

④ ----- 예약 개
시 -----

-----.

⑤ -----
현장 판매-----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⑥ (생략)

제10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모노레일 등 시설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하는 등의 반환 사유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반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경우
3. (생략)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가 구미에코랜드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및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

----- 예약 사항-----

-----.

제11조(시설이용 제한) -----

-----.

1. -----
----- 각종 회의-----
----- 이용 제한-----

2. ----- 개보수-----
3. (현행과 같음)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

----- 원인 제공자-----

-----.

② (생략)

제13조(세입조치) 모노레일 등 시설운영 수입은 구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4조(수입금 입금) 시설이용료 등으로 징수한 전일 수입금은 익일(금융기관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구미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구미에코랜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6조(사업지원 등) ① 시장은 구미에코랜드 등 산림문화·휴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세입조치) ----- 시설 운영 -----
-----.

제14조(수입금 입금) -----

----- 그다음 -----
----- 출납 계좌 -----
-----.

제15조(위탁운영) ① -----

----- 경우에는 「구미시 -----

-----.

② -----
----- 위탁 기간 -----

----- 갱신 기 -----
----- 간 -----.

제16조(사업지원 등) ① -----
----- 산림문화휴양 -----

양시설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과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
원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산림문화휴양시설의
이용증진 및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생략)

시설-----

----- 이해 증진-----

-----.

1.·2. (현행과 같음)

3. -----

이용 증진 -----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에코랜드 내 신설된 어드벤처 트리타워 운영에 따른 세입·세출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어드벤처 트리타워 이용료 및 운영비를 세입·세출 추계의 근거로 함

나. 추계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다. 운영비는 최근 5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2.4%)을 매년 적용함

※ 어드벤처 트리타워 이용료

기 준	이 용 료(개인)		이 용 료(단체)		비 고
	관내거주	관외거주	관내거주	관외거주	
어른(19세 이상)	10,000원	20,000원	8,000원	16,000원	
어르신(65세 이상) 청소년 및 어린이 (9세 이상 18세 이하)	8,000원	16,000원	6,000원	12,000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5개월)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어드벤처 트리타워 이용료	262,950	775,200	775,200	775,200	775,200	3,363,750
	소계(a)	262,950	775,200	775,200	775,200	775,200	3,363,750
세출	○ 어드벤처 트리타워 운영비	152,092	404,268	413,969	423,903	434,078	1,828,310
	소계(b)	152,092	404,268	413,969	423,903	434,078	1,828,310
□ 총 비용(a-b)		110,858	370,932	361,231	351,297	341,122	1,535,44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5개월)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152,092	404,268	413,969	423,903	434,078	1,828,310
민 간		-	-	-	-	-	-
기 타		-	-	-	-	-	-
합 계		152,092	404,268	413,969	423,903	434,078	1,828,310

5. 부대의견

- 세입(어드벤처 트리타워 이용료) 및 세출(어드벤처 트리타워 운영비)
예산은 추정비로서, 여건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6. 작성자

- 산림과 산림휴양관리팀 예상호(☎480-5887)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세입

- 어드벤처 트리타워 이용료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5개월)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어드벤처 트리 타워	관내거주	87,650	258,400	258,400	258,400	258,400	1,121,250
	관외거주	175,300	516,800	516,800	516,800	516,800	2,242,500
	소 계	262,950	775,200	775,200	775,200	775,200	3,363,750

※ 어드벤처 트리타워 이용 인원 : 64명/시간, 하절기(3~10월)-320명/일, 동절기(11~2월)-256명/일
지역 및 연령별 이용 인원 : 관내(40~50%), 관외(50~60%), 성인(80%), 어르신·청소년(20%)

2. 세출

- 어드벤처 트리타워 연간 운영비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5개월)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인건비	정규직원 (1명)	17,284	37,333	38,229	39,146	40,086	172,078
	안전요원 (8명)	124,440	344,064	352,320	360,776	369,435	1,551,035
	소 계	141,724	381,397	390,549	399,922	409,521	1,723,113
경비	인적 보험료	738	1,572	1,610	1,648	1,688	7,256
	시설물 관리	9,630	21,299	21,810	22,333	22,869	97,941
	소 계	10,368	22,871	23,420	23,981	24,557	105,197
계		152,092	404,268	413,969	423,903	434,078	1,828,310

소 관 부 서		산 립 과
입 안 자	과 장	정 봉 화
	팀 장	이 정 길
	담 당 자	예 상 호 (480-5887)